



2020. 12. 16.(수)
제296회 제천시의회
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안 건]

- 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 2021 관광마케팅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 박달재 목각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9
- 제천시 농촌협약 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12
-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제 천 시 의 회
산업건설위원회

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3. 제천시장
- 회 부 일 : 2020. 11. 16.
- 상 정 일 : 2020. 11. 24.(제29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체육·관광·휴양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과 같은 이용자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 발생시 위약금을 면제하고, 관리자 귀책사유에 따른 환불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 산림복지 바우처 확대방안으로 우선예약객실 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산림복지 바우처 이용자에 대한 우선예약객실 지정(안 제11조제4항 신설)
- 예약시설에 대한 위약금 부과 면제 사유 신설(안 제13조제6항제3호)
- 관리자 취소에 따른 배상금(환불) 규정 신설 (안 별표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강호)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공공시설 사용시 위약금 부담 경감 방안과 이용자 귀책사유 여부에 따른 환불규정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과 산림복지 바우처 사용자 우선 객실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관 계 법 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5. 주요 질의 및 답변 “ 생 략 ”

6. 소 수 의 견 “ 없 음 ”

7. 토 론 요 지 “ 없 음 ”

8. 심 사 결 과 “ 월 안 가 결 ”

9.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3. 제천시장
- 회 부 일 : 2020. 11. 16.
- 상 정 일 : 2020. 11. 24.(제29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현용)

가. 제안이유

-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 투명성 확보, 관리강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상위법령에 맞춰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역주민 누구나 공정한 사용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인터넷 등의 전산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사용 신청,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안 제3조제4항)
- 사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일정기간 사용 제한하는 규정 신설 (안 제17조제3항~제4항)

- 공공체육시설에 특정단체 입간판 및 현수막 등 홍보물 설치를 금지하도록 명시함 (안 제18조제1항)
- 상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배되는 내용 개정(안 제26조)
- 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시 위탁참여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안 제2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강호)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공공체육시설 공정한 사용 기준과 사용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과 체육시설 위탁 시 상위 법령과 맞게 위탁기간을 준용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5. 주요 질의 및 답변 “ 생 략 ”

6. 소 수 의 견 “ 없 음 ”

7. 토 론 요 지 “ 없 음 ”

8.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

9.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3. 제천시장
- 회 부 일 : 2020. 11. 16.
- 상 정 일 : 2020. 11. 24.(제29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가. 민간위탁 목적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조성한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의 민간 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 민간위탁에 의한 시설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통하여 전통시장 이용객 및 상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및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3조(위탁관리)에 따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추진 일정
 - 제천시의회 민간위탁동의안 제출 2020. 11월
 - 수탁신청서 접수 2020. 12월
 - 위탁개시 및 운영 2021. 1월

○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

- 관리 및 운영과정에서 효율성 제고
- 자체운영(직영) 시 발생하는 관리 소요예산(인력 등) 절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강호)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와 편의 등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각 시장별 고객지원센터 실무 경험이 많은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관 계 법 령

-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5. 주요 질의 및 답변 “ 생 략 ”

6. 소 수 의 견 “ 없 음 ”

7. 토 론 요 지 “ 없 음 ”

8. 심 사 결 과 “ 월 안 가 결 ”

9.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끝.

2021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3. 제천시장
- 회 부 일 : 2020. 11. 16.
- 상 정 일 : 2020. 11. 24.(제29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가. 민간위탁 목적

-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시티투어 운영, 관광전 참가, 핵심 관광지 육성사업 등 적극적인 관광마케팅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
-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2021년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추진 일정
 - 민간위탁 협약 체결 2021. 1. ~ 12월
 - 사업 운영 2021. 1. ~ 12월
-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
 - 우리시 관광을 적극적으로 마케팅 하여 중부권 최고의 관광도시 브랜드가치 제고 및 체류형 관광객 유입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강호)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를 견인하는 테마별 주요 관광사업을 전문기관의 민간위탁을 통해 관광객 유입 효과와 관광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관계 법령

- 「관광진흥법 제41조, 제43조, 제45조, 제46조」
-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제천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5. 주요 질의 및 답변 “ 생 략 ”

6. 소 수 의 견 “ 없 음 ”

7. 토 론 요 지 “ 없 음 ”

8. 심 사 결 과 “ 월 안 가 결 ”

9. 심사보고 붙임서류

- 2021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끝.

박달재 목각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3. 제천시장
- 회 부 일 : 2020. 11. 16.
- 상 정 일 : 2020. 11. 24.(제29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가. 민간위탁 목적

- 제천 제2경인 박달재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 등을 대상으로 볼거리 및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박달재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조성한 「목각전시장」의 위탁 운영기간 만료일(2020. 12. 31)이 도래됨에 따라
-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및 재위탁을 통해 효율적인 시설관리 등 관광발전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위탁시설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재 지 : 충북 제천시 백운면 박달로 212 ■ 건물현황 - 연 면 적 : A=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1층 - 주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기본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에게 위탁관리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 평가 및 재계약 여부 심의 	
수탁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천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박달재 목각전시장 내에서 상시 공예 활동을 하면서 방문객(관광객)에게 작품설명 등 안내가 가능한 자 ■ 목각전시장 규모에 적합한 작품 전시가 가능한 자 	
수탁기관 모 집 및 선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 선정 ■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6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위원 중 공무원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 심의위원회 개최 	
위탁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 1. 1. ~ 2022. 12. 31.(2년) ※ 위·수탁 계약서 제4조 제1항 명시 	
수탁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비 수익시설) 	
운영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운영비 3,000천원 정도 ※ 세금, 공과금, 건물공제보험료 등 지자체 부담 	
운영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운영계획에 의거 운영 원칙 ■ 연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 후 수탁자 평정에 반영 	
협약및공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자 선정 후 위·수탁협약 체결(협약서 공증) 	

○ 민간위탁 추진 일정

- 2020. 11. : 제천시의회 동의
- 2020. 12.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운영

○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

- 박달재 목각전시장을 시설관리 적합자에게 재위탁관리 함으로써 공유 재산 관리 및 운영과정에서의 효율성 제고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강호)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명소인 박달재 목각전시장 관광활성화와 관광객 유인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관 계 조 례

-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5. 주요 질의 및 답변 “ 생 략 ”

6. 소 수 의 견 “ 없 음 ”

7. 토 론 요 지 “ 없 음 ”

8. 심 사 결 과 “ 월 안 가 결 ”

9. 심사보고 붙임서류

- 박달재 목각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끝.

제천시 농촌협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3. 제천시장
- 회 부 일 : 2020. 11. 16.
- 상 정 일 : 2020. 11. 24.(제29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가. 민간위탁 목적

-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고령화, 도·농 소득격차 심화 등으로 약화된 농촌공동체 활력을 농촌마을에 산재된 다양한 농업·비농업 자원의 활용을 통해 농촌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력을 증진하고,
- 농촌협약, 농촌뉴딜, 지방이양 등 새로운 정책환경 요구에 따라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가 필요조건으로 대두됨에 따라,
- 농촌 중심지와 배후마을 간 상호 연계 강화를 통한 「365생활권」 구현으로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협약 지원센터를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내용

구 분	내 용
민간위탁기본방침	○ 제천시의회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게 위탁 추진
운 영 계 획	○ 연간 운영계획에 의거 운영 원칙 ○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 후 승인
수 탁 자 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아래항에 해당하는 자 ○ 농촌 지역개발사업 등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활용, 지역 내 핵심주체 역량배양 및 마을별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한 법인·단체
위 탁 기 간	○ 2021년 협약체결일 ~ 2023년 12월
위탁사무 및 내용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촌활성화사업 등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 유·무형의 지역자원 조사·발굴·분석·연구 및 사업화 ▶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과 연수, 컨설팅 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 ▶ 자체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 농촌중심지 활성화, 마을만들기 등 관련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 농촌생활권 활성화, 농촌관광 및 체험, 신활력 플러스, 귀농귀촌 활성화, 청년 활성화 등에 대한 중간지원 ▶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교육 및 마을 컨설팅 ▶ 마을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평가·연구 ▶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 ▶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 ▶ 그 밖에 시장이 농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운 영 경 비	○ 630백만원 *21년 210백만원, 22년 210백만원, 23년 210백만원
협약 및 공증	○ 추후 체결

○ 민간위탁 추진 일정

- 2020. 12월 : 2021년 당초예산 의결
- 2021. 01월 : 수탁자 공개모집 및 심의위원회 개최
- 2021. 02월 : 수탁기관 협약 체결
- 2021. 03월 : 제천시 농촌협약 지원센터 운영

○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

- 농촌협약 지원센터 민간위탁을 통해 특색 있고 살고 싶은 마을 육성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농촌 현장과 소통, 주민이 원하는 농촌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중간 마중물 역할 수행
- 자치분권 강화로 배후마을 정책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민·관이 협력하여 상향식 사업추진을 핵심으로 하는 「제천형 거버넌스」 구축과 체계적 운영관리를 통해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 확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강호)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점점 쇠퇴하는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 고령화, 도·농간 소득 격차 등의 해소를 위해 농촌의 새로운 정책 환경이 요구됨에 따라 농촌협약과 중간조직의 기능 등을 통해 농촌의 실질적 정주여건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

4. 관 련 조 례

-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제천시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 주요 질의 및 답변 “ 생 략 ”

6. 소 수 의 견 “ 없 음 ”

7. 토 론 요 지 “ 없 음 ”

8.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

9.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 농촌협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끝.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3. 제천시장
- 회 부 일 : 2020. 11. 16.
- 상 정 일 : 2020. 11. 24.(제29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수도사업소장 김명수)

가. 심의안건

-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 1건
 - 공유재산 취득 : 1건

[취득재산]

(단위: m², 천원)

구분	취득면적					기준가격 (추정가격)	취득사유
	토지		건물(시설물)		공작물 수량(식)		
	필지	면적	동	면적			
계	12	129,435				314,889	
산림 공원과	2	125,506				196,544	산림의 공공성강화를 위한 사유권 취득
수도 사업소	10	3,929				118,345	물길 100리 관광기반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강호)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첫 번째,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산 취득 변경 건은 시민들의 산림휴양욕구 충족에 부흥하고, 산림인프라 구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산림 사업량을 증대시켜 국비 확보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 산림의 공공가치 실현을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두 번째, 물길 100리 관광기반 조성사업 관로 매설에 따른 재산 취득 건은 우리 시 주요 거점 관광지인 수변 공원, 관광폭포 등의 테마 관광시설물 등의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관 계 범 령

-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총괄)
-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처분대상 재산목록
-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5. 주요 질의 및 답변 “ 생 략 ”

6. 소 수 의 견 “ 없 음 ”

7. 토 론 요 지 “ 없 음 ”

8.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

9. 심사보고 붙임서류

-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3. 제천시장
- 회 부 일 : 2020. 11. 16.
- 상 정 일 : 2020. 11. 24.(제29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3. 심의안건

-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공유재산 취득 : 3건

[취득재산]

(단위: m², 천원)

구분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추정가격)	취득사유
	토지		건물(시설물)		공작물 수량(식)		
	필지	면적	동	면적			
계	8	455,216	1	3,300	1	7,392,784	
일자리경제과			1	3,300		4,490,000	내토·동문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일자리경제과					1	1,232,000	제천고추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산림공원과	8	455,216				1,670,784	산림의 공공성강화를 위한 사유림 취득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강호)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첫 번째, 내토·동문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건은 차량통행과 유동인구가 빈번한 지역이며 특히, 주차난이 가장 심한 시가지 일원으로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전통시장 상권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두 번째, 제천고추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건은 고추시장의 열악한 환경개선과 옛 명맥을 살리고자 시장 내 비 가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고추시장의 상권 활성화와 우수한 지역특산물 등을 상설화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세 번째,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유림 취득 건은 시민들의 산림휴양의 욕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산림의 가치실현을 위해 사유지를 점진적으로 매입하여 산림가치 실현과 산림사업 추진시 국비 확보시 유리한 점 등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5.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

6. 주요 질의 및 답변 “ 생 략 ”

7. 소 수 의 견 “ 없 음 ”

8. 토 론 요 지 “ 없 음 ”

9. 심 사 결 과 “ 수정 가 결 ”

10. 심사보고 붙임서류

○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끝.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947호 관련
----------	-------------

발의일자 : 2020. 11. 24.

발 의 자 : 산업건설위원회 6명

1. 수정이유

- 제천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내토·동문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건” 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목록에서 삭제함.

2. 주요내용

- “내토·동문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건” 삭제